

의안번호	2218633
의 퇴 인	홍기원 의원
회 답 일	2026. 6. 23.
추계번호	26C236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10조의2 (다자녀가족의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2항) 국가는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교통, 문화, 교육, 주거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운영할 수 있음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2항·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2 (다자녀가족의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의 출산·주거·양육·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이하 주요 사업 예시 참고)
- (첫만남 이용권) 첫째 자녀 2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300만원 지급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
 - 연간 1자녀 15만원, 2자녀 35만원, 3자녀 이상 35만원 및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공제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2자녀 양육 가구의 경우 7~10인승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의 50% 감면, 그 외 6인승 이하 등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140만원 초과면 70만원 공제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 우선 제공
 -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할인
 - (가스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동절기의 경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철도요금 할인) KTX·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면제)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표 1]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지역	카드명	지역	카드명
서울특별시	다둥이행복카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아이키움카드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	충청북도	다자녀행복카드
인천광역시	아이모아카드	충청남도	다자녀행복키움카드
대구광역시	아이조아카드	전북특별자치도	아이조아카드
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전라남도	다자녀행복카드
광주광역시	다자녀행복카드	경상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경상남도	경남아이다누리카드
경기도	아이플러스카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아이사랑카드		

자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웹페이지

-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시책을 시행하고, 신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운영하며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신규 사업 추진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10조의2제1항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0조의2제5항은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시 변경될 내용을 알 수 없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